

# 보험연구원

R E P O R T

금융소비자보호법의  
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(1)

- 양승현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 -

## ▣ 금소법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

2021년 3월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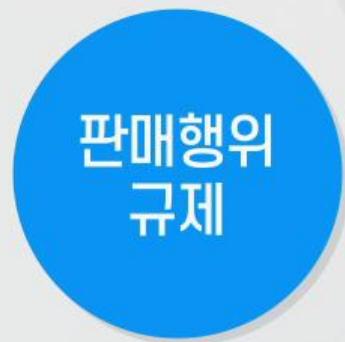
## 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

구분	자본시장법	보험업법	은행법	여전법	저축은행법
적합성원칙	○	○	×	×	×
적정성원칙	○	×	×	×	×
설명의무	○	○	○	○	○
불공정영업행위	○	○	○	×	×
부당권유행위금지	○	○	×	○	×
광고규제	○	○	○	○	○



동일기능·동일규제의 원칙 하  
“금융통합법률”

## 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



포괄적, 통합적인 **금융소비자보호** 체계 구축



금융소비자 **보호**를 위한 **기본법** 제정

## 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



## 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



곧 제정 예정

## 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

새로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

보험업 관련 예상되는 주요 규제 변화

## ■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

은행, 보험 등  
각 권역별



## ■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



## ▣ 금융상품의 유형

보장성	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보험상품 등 ※ 변액보험 포함
투자성	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펀드, 신탁 등
예금성	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예·적금 등
대출성	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대출, 신용카드 등 ※ 보험회사 취급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

## ▣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유형

구분	개념	대상(예시)
직접 판매업자	대리,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	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
판매 대리·중개업자	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	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·중개사, 보험대리점, 카드·대출모집인 등
자문업자	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	투자자문업자

## || 금융상품 정보 차이 ||



소비자  
합리적 선택의 어려움

■ 사전 정보제공 –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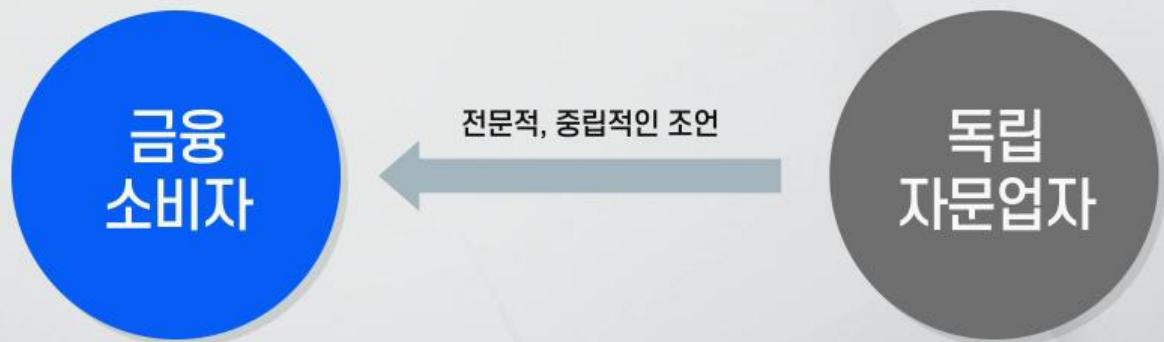
## ▣ **금소법**

사전의 정보제공으로  
**불완전판매**를 예방

1

# “금융상품자문업” 도입

(제2조 제4호 및 제5호)



2

## “금융교육 강화” (제30조, 제31조)

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

금융역량조사 시행

3

## “금융상품 비교·공시” (제32조)

금융상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공시

상품 비교공시 제도의 통합적·체계적 관리

## ■ 판매행위 규제 및 제재 강화

### ▣ 법 시행 전후 주요 규제 변화(보험업 관련)

구분	개념	대상	
		시행 전	시행 후
적합성 원칙 (제17조)	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	변액보험에 적용	변액보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등에 적용, 대출에는 예외없이 적용
적정성 원칙 (제18조)	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·확인의무 부여	없음	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설명의무 (제19조)	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	보험상품에 적용	보험상품, 대출, 연계·제휴서비스 등에 적용, 설명서 제공의무 법정화
불공정 영업행위금지 (제20조)	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강요, 부당한 담보요구, 부당한 편의 요구 등 금지	부당대출 관련	부당대출 외 연계·제휴서비스 등의 부당한 축소·변경 행위 금지 등
부당권유금지 (제21조)	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	보험상품에 적용	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광고규제 (제22조)	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	보험상품에 적용	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
1

## 적합성 원칙 (제17조)

개념	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
대상	시행 전 • 변액보험에 적용
	시행 후 •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등 적용 범위 확대 • 대출에는 예외없이 적용

2

## 적정성 원칙 (제18조)

개념

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·확인 의무 부여

대상

시행 전      없음

시행 후     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
3

## 설명의무 (제19조)

개념	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	
대상	시행 전	보험상품에 적용
	시행 후	보험상품, 대출, 연계·제휴서비스 등에 적용, 설명서 제공의무 법정화

4

##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(제20조)

개념	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강요, 부당한 담보요구, 부당한 편의 요구 등 금지	
대상	시행 전	부당대출 관련
	시행 후	부당대출 외 연계·제휴서비스 등의 부당한 축소·변경 행위 금지 등

5

## 부당권유 금지 (제21조)

개념

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 
예 ) 불확실한 투자상품을 “무조건 이익 보장”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

대상

시행 전	보험상품에 적용
시행 후	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
6

## 광고규제 (제22조)

개념	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포함/금지행위 규제
대상	시행 전      • 보험상품에 적용
	시행 후      • 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

## ▣ 현재의 보험업법



보험상품



광고  
규제



규제 범위가 대출 등으로  
확대 예정

## ■ 판매행위 규제 및 제재 강화



규제의 실효성 확보

위반 시  
제재 강화

## 판매제한 명령권

(제49조)

-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,  
**상품 판매 금지 등 명령 가능**
-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**방지하거나 최소화**

## | 징벌적 과징금 |

(제57조)

적합성·적정성 원칙 외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 
위반행위로 인한 **수입의 50%까지 과징금 부과**

본 저작물은 보험연구원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 
보험연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 
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